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9. 2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9월 8일

나. 발 의 자: 이성수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9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9.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과 「건축물관리법」의 신규 제정·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적합성 확보와 행정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공개 공지 등에 대한 지원절차 (안 제6조)
- 건축위원회의 자문 (안 제7조)
- 공개 공지 등의 유지 관리 의무와 책임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테레사)

□ 개정 배경 및 취지

- 본 조례는 민간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을 활용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공원·녹지 확충에 기여하고자 제정(2009. 4. 23.)되었음.
- 그러나 제정 이후 지금까지 약 16년간 「건축법」의 개정과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시행 등 관련 상위법령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현행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현행 조례에 규정된 ‘건축디자인위원회’가 현재는 ‘건축위원회’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본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 기능은 ‘건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개정 사항과 현행 위원회 운영체계를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제1호는 누락된 “제1항”을 규정함.
- 안 제6조 및 제7조는 변경된 위원회 명칭에 맞게 개정(건축디자인위원회→건축위원회)
- 안 8조 및 안 별지 제1호서식은 본 조례 제정 당시 「건축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건축물관리법」 제정으로 같은 법 제12조에 규정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정 이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현행 운영 실태와 맞지 않았던 조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건축디자인위원회’ 명칭을 실제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로 개정함으로써 조례 규정과 실제 운영체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 「건축법」 개정 및 「건축물관리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05
----------	-----

발의연월일: 2025. 9. .

발 의 자: 이성수, 이순우, 우경란
최인순, 정선희 의원
(5인)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과 「건축물관리법」의 신규 제정·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적합성 확보와 행정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공개 공지 등에 대한 지원절차 (안 제6조)
- 다. 건축위원회의 자문 (안 제7조)
- 라. 공개 공지 등의 유지 관리 의무와 책임 (안 제8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등포지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축법」 제2조제1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디자인위원회(이하 “건축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위원회의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건축디자인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축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2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④ (생략)

제7조(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설물정비계획은 사업 시행 전
에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시설물정비계획은 「건축
법」 등 제반 법령에 적합한 것
으로 본다.

제8조(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 ①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는 「건축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
2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
다.

②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자문) ① -----

위원회-----
-----.

② 위원회-----

-----.

제8조(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 ① -----

----- 「건축물관리법」 제12
조-----

-----.

② (현행과 같음)